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0. 27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 10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. 10. 19.

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5. 10. 2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 강 희 천

가. 제안이유

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 입주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에 주상복합건축물이 포함되고, 제15조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세대수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. (안 제3조)
- 2) 전문가 자문단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. (안 제4조의3)
- 3)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 보수비는 지원심의회를

-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수 공사를 지원. (안 제10조)
- 4)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는 <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>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증감하도록 하였으나,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임의관리 단지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지원 실시. (안 별표1)
- 5) 지원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사유를 추가 (안 제11조의2)
- 6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 입주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에 주상복합건축물(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)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으며 제15조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20세대에서 30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기존 조례 제4조제2항~제4항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였고 안 제10조에서 영구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하여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 보수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임의관리대상(150세대 미만) 공동주택은 [별표1] 1항 나목의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제2호의 「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」의 평가항목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

주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지원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조문을 신설하여 분쟁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에 참여한 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.

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,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